

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백진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4년 11월 20 일

발 의 자 : 성 백 진 의원

찬 성 자 : 김경자, 김영한, 김진철, 김태수,
김혜련, 김희걸, 맹진영, 장우윤,
유동균, 이승로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“부의”를 “회의에 부치다”로 하고 해촉”을 “위촉해제”로 하며 “잔임
기간”을 “임기가 남은 기간”으로 하고 “년2회”를 “연 2회”로 하고 “소집
하고자 하는”을 “소집하려는”으로 하며 “비치”를 “보관”으로 함 (안 제
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9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로 한다.

제4조 제3항 중 “해촉할”을 “위촉해제할”로 하며 “잔임기간으로”를 “임기가 남은 기간으로”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년2회”를 “연 2회”로 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소집하고자 하는”을 “소집하려는”으로 하고 “부의사항을”를 “회의에 부치는 사항을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년2회”를 “연 2회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비치하여야”를 “보관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~8. (생 략)	1.~8. (현행과 같음)
9. 청소년 건전육성·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"시장"이라한다)이 <u>부의하는 사항</u>	9. ----- ----- -- <u>회의에 부치는</u> --
제4조(위원의 임기)	제4조(위원의 임기)
①~② (생 략)	①~② (현행과 같음)
③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,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<u>해촉할</u> 수 있으며 위원 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임기간</u> <u>으로</u> 한다	③ ----- ----- ----- <u>위촉해제할</u> ----- ----- ----- <u>임기가 남은 기간</u> <u>으로</u> ---.
제6조(회의)	제6조(회의)
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<u>년2회</u>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 최한다.	① ----- ----- <u>연 2회</u> ----- ----- -----.
② 위원회의 회의를 <u>소집하고자</u> 하 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<u>부의사항을</u>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	② ----- <u>소집하려</u> <u>는</u> ----- <u>회의에 부치는 사항을</u> ----- ----- -----

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	----- -----.
제10조(청소년 회의 개최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 세미만의 중·고등·대학생인 청소 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<u>년2회</u> 이상 개최한다.	제10조(청소년 회의 개최) ----- ----- ----- 연 <u>2회</u> ----- -----.
제11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사항 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, <u>비치하여</u> <u>야</u> 한다.	제11조(회의록) ----- ----- <u>보관하여</u> <u>야</u> ---.